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
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1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1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전환근로자의 정년은 만 62세에 도달한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하
는 것으로 하고,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 가능연령을 만70세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정년) 전환근로자의 정년은 <u>만 60세에</u> 도달한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 직하는 것으로 하고, 기간제근로 자는 재계약 가능연령을 만70세 로 한다.	제17조(정년) ----- <u>만 62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